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위생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0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 3. 설치근거

-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 4.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금천구에서는 총 15개<sup>1)</sup>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임.
- 2025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48,223,877천원임.
  - 2025년도 말 조성액 : 33,572,594천원
  - 용자금 미회수채권 : 14,651,283천원

1) 법정 의무 5개(고향사랑, 재난관리,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 3개(통합재정안정화, 중소기업육성, 양성평등), 구 자체 7개(남북교류협력, 청년미래,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노인복지,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도로굴착복구)

## 5.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개별기금별 운용계획

(단위 : 천원)

| 기금명      | 2024년도말<br>조성액 ㉠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 2025년도말<br>조성액<br>㉡=㉠+㉢-㉣ | 증감<br>㉤=㉡-㉠ |
|----------|------------------|---------------|------------|---------------------------|-------------|
|          |                  | 수입㉢           | 지출㉣        |                           |             |
| 합계       | 34,380,241       | 6,149,116     | 13,324,500 | 27,204,857                | -7,175,384  |
| 남북교류협력기금 | 163,760          | 4,000         | 57,800     | 109,960                   | -53,800     |
| 고향사랑기금   | 105,015          | 58,726        | 0          | 163,741                   | 58,726      |
| 재난관리기금   | 5,897,981        | 1,351,951     | 672,600    | 6,577,332                 | 679,351     |
| 통합재정안정화  | 21,425,003       | 682,526       | 6,985,877  | 15,121,652                | -6,303,351  |
| 중소기업육성기금 | 3,807,538        | 3,896,000     | 5,000,560  | 2,702,978                 | -1,104,560  |
| 청년미래기금   | 2,107,794        | 83,391        | 316,523    | 1,874,662                 | -233,132    |
| 식품진흥기금   | 873,150          | 72,522        | 291,140    | 654,532                   | -218,618    |

## 6.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

나.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

식품위생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사업 지원.

## 7.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 기금명    | 2024년도 말<br>조성액 ㉠ | 2025년도 조성계획 |         |             | 2025년도 말<br>조성액<br>㉡=㉠+㉢-㉣ | 비고 |
|--------|-------------------|-------------|---------|-------------|----------------------------|----|
|        |                   | 수입㉢         | 지출㉣     | 증감<br>㉤=㉢-㉣ |                            |    |
| 식품진흥기금 | 873,150           | 72,522      | 291,140 | -218,618    | 654,532                    |    |

##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 기금명    | 2025년도 말 조성액 <sup>㉠</sup> | 용자금 미회수 채권 <sup>㉢</sup>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sup>㉡</sup> | 총 조성규모<br>$(㉠) = (㉠) + (㉢) - (㉡)$ |
|--------|---------------------------|-------------------------|---------------------------|-----------------------------------|
| 식품진흥기금 | 654,532                   | 0                       | 0                         | 654,532                           |

## 다. 자금 운용 계획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항목       | 수입액           | 전년도 수입액       | 증감           |
|----------|---------------|---------------|--------------|
| <b>계</b> | <b>72,522</b> | <b>70,765</b> | <b>1,757</b> |
| 이자수입     | 37,674        | 33,203        | 4,471        |
| 과징금 수입   | 23,848        | 26,562        | -2,714       |
| 시비보조금    | 11,000        | 11,000        | 0            |

###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항목       | 지출액            | 전년도 지출액        | 증감            |
|----------|----------------|----------------|---------------|
| <b>계</b> | <b>291,140</b> | <b>294,130</b> | <b>-2,990</b> |
| 일반운영비    | 54,140         | 54,330         | -190          |
| 재료비      | 1,000          | 1,000          | 0             |
| 기타보상금    | 80,000         | 82,800         | -2,800        |
| 민간경상사업보조 | 6,000          | 6,000          | 0             |
| 민간용자금    | 150,000        | 150,000        | 0             |

## 8. 검토의견

-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위생 교육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사용됨.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674천원,

과징금 수입 23,848천원

시비보조금 11,000천원

총 72,522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54,140천원

재료비 1,000천원

기타보상금 8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천원

민간융자금 150,000천원

총 291,140천원임.

-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식품위생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신설 2016.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0.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6.10.1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 입금

[제목개정 2016.10.14.] <개정 2016.10.14.>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개정 2016.10.14.>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6.10.14.>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16.10.14.>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개정 2016.10.14.>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신설 2016.10.14.>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개정 2016.10.14.>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0.14.>

**제8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홍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 제9조(용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자하여야 한다.

### **제10조(용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용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용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와 해당 구금고 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16.10.14.] <개정 2016.10.14.>

###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5.24.>